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합21092 판결 [매매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장희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변론 종결2022. 9. 22.

판결 선고2022.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1.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및 알선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운송사업경영권 및 주식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 중 필기체로 기재된 부분은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인쇄된 문구이다).

운송사업경영권 및 주식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

상호	피고	매매대금	1,950,000,000원
면허번호		계약금	2020. 10. 14.
주식수	62,000주	중도금	157,079,810원
등록대수	21대	잔금	
가동대수	21대	기타	
(직영차량 = 13대, 지입차량 = 8대)			
(차량내역 = 차량 현황표 첨부)			

3. 을(원고)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7,079,810원을 갑(피고)에게 지불하고 갑은 계약금을 정히 영수함

4. 을은 중도금을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중도금을 을에게서 영수하고 차량수, 위탁계약서 등 법인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단, 중도금일에 계산하여 잔금 및 미수금을 지불시 계산하여 을이 갑에게 지불하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임서와 인감 일체를 인도한다. 갑, 을이 쌍방 합의하면 '단'항에 준하지 않는다).

5. 잔금은 을이 인수하기 이전 발생되었던 채무 제세공과금 누락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공제하고 지급한다.

6. 양도양수 기준일은 2020. 10. 1.로 정하고 직원 및 고용인 등의 급여와 퇴직금 등 기준일 이전은 갑이 책임지고 기준일 이후는 을이 책임진다.

13. 본 계약을 갑이 해약 요구할 시 계약금의 배액과 공적인 비용을 변제해야 하며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 계약금은 무효이고 공적인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16. 매매가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이 가격 결정함

① J. 8대 21대 $\times 25,000,000 = 525,000,000$

② 주선면허: 50,000,000

③ 직영차량 13대 차량대와 장치대

$13대 \times 10,000,000 = 130,000,000$

④ 충남 아산시 8대 300평 = 300,000,000

" 7대 300평 = 300,000,000

" 전 656평 = 360,102,016

" H전 373평 = 204,753,128

" 9 전 146평 = 80,144,656

18. 잔금은 을이 갑의 용자금을 책임지기로 하고 갑이 을에게 잔금을 안 받기로 갑과 을이 결정함
다. 원고는 2020.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1. 원고는 피고와 2020. 10. 1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지불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귀하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며
많은 전화통화와 수차례 귀사 방문 하는 등 독촉하였으나 주식일체 양도를 불이행함에 따라 서면으로
독촉 최고 통지 합니다.

3. 이 서면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2021. 1. 28.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수신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 6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10. 14.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곧이어 피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7억 원을 추가로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7억 원이 입금이 안 되어 당사는 부가세와 4대 보험 등이 연체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지입차량 8대 소유 기사들과 11월 중에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7억 원 입금이 되지 않아 계약파기에 이르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원고는 주식 포기 각서 및 주식 양도 거절확인서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7억 원과 잔금이 입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만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입금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2021. 2. 28.까지 7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여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운송사업경영권 및 주식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목적물인 피고 소유의 차량, 운송사업허가증,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2) 이행지체,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1,950,000,000원 중 잔금 1,67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갚음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합계 280,000,000원인데,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계약금과 중도금보다 많은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이외에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위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0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3) 사기로 인한 취소 원고는 피고의 채무가 1,670,000,000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의 채무는 약 2,800,000,000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3항의 직영차량 13대에 관한 대금은 같은 조 제1항의 차량 21대의 대금과 중복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별개의 항목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이외에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포기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소유의 차량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실제 채무 내역을 모두 알려주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의 채무가 2,800,000,000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인수비용 1)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면 피고가 피고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되, 만약 원고가 위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3. 이행불능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이외에 1,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1,95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이 1,9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을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0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전혀 문서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2021. 3. 8.경 M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화녹취록(을 제2호증)이 있기는 하나, D가 M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점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 및 M은 이 사건 계약의 주선자이자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0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N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기재 역시 N가 피고의 직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12. 30. 피고 측의 D, O(피고의 고문이다)과 원고 측의 P, Q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주기로 한 1,000,000,000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O의 증언 역시 P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및 피고와 O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이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등 참조).

갑 제12, 1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3. 8. 주식회사 R에게 피고 소유의 차량 21대 및 운송사업허가증을 매도하였고 이전 등록이 모두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기재된 각 토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D 등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와 D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 등에게 매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충남 아산시 E	피고	S	2021. 1. 25.	2021. 1. 25.자 매매
F	D	S	2021. 1. 25.	2021. 1. 25.자 매매
G	D	T	2021. 1. 27.	2021. 1. 25.자 매매
H	D 등 5인	U	2021. 1. 27.2) 단, D와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던 J의 1/5지분에 관하여는 2021. 1. 27.이 아닌 2021. 4. 8.에 2021.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 I 토지 또한 같다.	2021. 1. 25.자 매매
I	D 등 5인	T	2021. 1. 27.	2021. 1. 25.자 매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차량, 운송사업허가증, 토지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운송사업경영권과 주식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는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2. 4.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2. 4.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 12. 30.자 회의록(갑 제5호증)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의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회의록은 P이 원고의 부친인 V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간 자리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 제목이 '회의록'으로 되어 있고, 피고 측 D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원고 측의 서명은 없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회의록에는 '주식인수금(추가) 1.2억(○ 고문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O은 피고 측 관계자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인수비용으로 120,000,000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 수령일인 202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선범

판사시용재

- 1) 당시 피고 발행주식을 사내이사인 D 외에도 D의 남동생 J, J의 처 K, D의 여동생 L 등이 일부 보유하고 있었기에 D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대가를 지불해 위 J 등의 보유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 2) 단, D와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던 J의 1/5지분에 관하여는 2021. 1. 27.이 아닌 2021. 4. 8.에 2021.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 I 토지 또한 같다.